

의안번호	제 34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9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	-----

제안연월일 : 2019년 12월 16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근거조항 정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근거조항 정정(안 제1조)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의장 → 충청북도의회의장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5조)
 -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현지교통비, 숙박료 → 일비, 숙박비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7. 입법예고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의장”을 “충청북도의회의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한다.

제5조 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u>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비용) ① <u>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② 제1항의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u>의장</u>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1. ~ 4. (생략)</p> <p>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u>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u> <u>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u>를 준용한다.</p>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u>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u>증인·감정인 및 참고인</u>----- ----- -----.</p> <p>제2조(비용) ① <u>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u>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u>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u>-----.</p> <p style="padding-left: 2em;">② ----- -----<u>충청북도의회의장</u>----- ----- -----.</p> <p>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 style="padding-left: 2em;">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u>----- -----.</p>

관계법령발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율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